



# COVID-19 산업별 지침:

쇼핑몰, 관광지 쇼핑 센터, 상가, 아울렛 및 중고 거래 시장

2020년 7월 29일

covid19.ca.gov



## 개요

2020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 담당관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 디렉터는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에게 자택 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COVID-19가 캘리포니아주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알려진 질병은 매우 경증(일부 사람은 증상이 없음)에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까지 이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 당뇨병과 같은 중대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특정 집단은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감염자에게 증상이 없거나 아직 증상이 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였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함께 있는 경우 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중요 인프라 업계 직원들을 비롯하여 산업별 또는 직업 그룹별 COVID-19의 감염자 수와 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다수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직원들이 COVID-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의 예로는 병원과 장기 요양 시설, 수감 시설, 식품 제조, 창고, 육류 가공 공장,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자택체류 명령이 수정됨에 따라, 직원과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주요 예방 방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 ✔ 호흡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직원 및 고객/손님의 안면 가리개 사용
- ✓ 자주 손 씻기 및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 ✓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COVID-19 예방 계획 및 기타 예방 수칙 교육

또한, 직장 내 새로운 감염자를 식별하고, 식별 시 신속하게 개입하며 공공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중단시키는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목적

본 문서는 쇼핑몰, 관광지 쇼핑 센터, 상가, 아울렛 및 중고 거래 시장(이하 "쇼핑 센터 운영자")에서 직원, 고객 및 일반인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쇼핑 센터 운영자는 소매점 세입자, 노점 등의 임차인들이 쇼핑 센터의 운영에 적용되는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체는 지침을 이행해야 할책임이 있으나, 쇼핑 센터 운영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쇼핑 센터 운영자는 반드시 소매점 세입자 및 노점에서 소속 직원 및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 안전 조치를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시행 가능한 경우에만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참고: 영화관, 음식점, 푸드 코트, 주류 바, 스파, 미용실, 또는 기타 개인 관리 서비스를 갖춘 쇼핑 센터는 소매점 입주자들에게 해당 산업에 관련된 COVID-19 복귀 안내

<u>웹사이트</u>를 참고하게 해야 합니다. 쇼핑 센터에서의 음악 또는 기타 공연을 포함한 모든 공공 행사 또는 인원이 밀집하는 모임은 반드시 취소 또는 연기되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근로자의 모든 법적 권리, 규범적 권리 및 단체 교섭으로 얻어낸 권리를 박탈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카운티 보건 명령을 포함하지 않고 캘리포니아/OSHA의 모든 기존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제 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1 캘리포니아/OSHA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웹 페이지에 게시한 직원 보호를 위한 준수 요건에 대한 캘리포니아/OSHA 지침에서 안전 및 보건 관련 지침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CDC에서는 사업체 및 고용주 관련 추가 지침과 식료품 및 음식 소매점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DA(미국 식품 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음식 소매 매장, 음식점 및 음식 포장/배달 서비스의 모범 경영 방식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면 가리개 필수 사용

6월 18일, 캘리포니아주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는 <u>안면 가리개 사용에 관한 지침</u>을 발표했으며, 이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모든 공공 및 직장 환경에서 대중 및 직원 모두가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시민은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직장 밖에서 업무 수행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대중 속에서 사람들과 직접 상호 교류하는 경우
- 대중 속의 사람들이 업무 시점에 같은 공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 속의 사람이 방문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음식이 준비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포장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 시설과 같은 공용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곳을 걸어서 지나가는 경우
-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방이나 밀폐된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개인의 가정이나 거주지 제외)
- 승객이 있을 때 대중 교통 또는 보조교통 차량, 택시, 자가용 서비스 또는 승차 공유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승객이 없을 때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모든 요건과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 사항을 비롯한 전체 세부 사항은 <u>지침</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상황에서는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하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안면 가리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합당한 안면 가리개 구매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 중 하나에 부합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는 직원이 질환으로 인해 이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최하단 가장자리 부분에 길게 덮는 천(드레이프)이 부착된 안면 보호대와 같은 비제한적 대체품을 실행 가능한 경우, 그리고 해당 직원의 질환 상태가 이와 같은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제공해야 합니다.

대중에게 개방된 사업체는 <u>CDPH 안면 가리개 관련 지침</u>의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을 인지하여야 하며, 대중 속의 사람이 <u>지침</u>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체는 고객과 손님, 방문자, 직원 중에서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업무 공간별 특정 계획

- 모든 위치에서 문서화된 직장별 특정 COVID-19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업무 영역 및 과업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며, 각 시설에서 해당 계획을 구현하도록 담당 직원을 지정합니다.
- <u>CDPH 안면 가리개 관련 지침</u>을 직장별 특정 계획에 반영하고 예외 사항에 대응하는 정책을 포함시킵니다.
- 직원 또는 고객 중 COVID-19 감염자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소가 위치한 현지 보건 부서의 연락처 정보를 명시합니다.
- 직원 및 직원 대표와 직장별 계획에 관해 교육 및 전달하고, 직원 및 직원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수립된 계획 및 문서를 준수하는지 해당 시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식별한 결함을 수정합니다.
- 모든 COVID-19 관련 질병을 조사하여 작업 관련 요소가 감염 위험에 기여했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
- <u>CDPH 지침</u>에 따라 직장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절차와 프로토콜을 시행합니다.
- 감염된 직원과 밀접하게 접촉(6피트 이내 15분 이상 동안)한 사람을 찾아내고 COVID-19 양성 직원을 격리하고 밀접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아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OVID-19 발병을 초래하여 일시적으로 직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 <u>COVID-19</u>에 대한 정보 및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COVID-19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기저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 <u>CDC 지침</u>에 따라 체온 또는 증상 확인 등 자택 내 자가 선별 검사 방법.
- 출근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이나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증상 발현, 인후통, 코막힘이나 콧물, 구역질, 구토 또는 설사와 같이 CDC가 언급한 COVID-19 증상이 직원에게 나타난 경우

- o 또는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아직 격리 해제되지 않은 경우
- 또는 지난 14일 내에,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사람과 접촉했고 잠재적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즉, 여전히 격리 상태에 있는 경우).
-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직원은 증상이 처음 발현한 이후 10일이 경과하고,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지난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발열을 겪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이 없는 직원은 첫 번째 COVID-19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흉부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을 포함하여 현기증 또는 창백한 입술이나 얼굴 등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업데이트 및 자세한 내용은 CDC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초 동안 비누로 문지르는 등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의 중요성[또는 직원이 CDC 지침에 따라 개수대 또는 손 세정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60%의 에탄올(권장) 또는 70%의 이소프로판올(지켜보지 않는 동안에도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경우에만)을 함유한 손 소독제 사용].
- 근무 시간 및 근무 시간 외 물리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아래 물리적 거리두기 항목 참조).
-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안면 가리개 사용:
  - o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아닙니다.
  -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두기와 잦은 손 씻기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o 안면 가리개는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이야 합니다.
  - o 직원은 얼굴 커버를 사용하거나 조절 후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 o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안면 가리개는 공유해서는 안 되며, 각 교대조 후 세척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 <u>안면 가리개 사용에 대한 CDPH 지침</u>에 포함된 정보로, 본 지침은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예외 상황을 비롯하여 안면 가리개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채택한 모든 정책과 업무 규칙, 관행을 규정합니다. 또한 교육에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설 내 독립 계약자, 임시직 또는 계약직 직원들이 COVID-19 예방 정책에 대해 적절히 교육을 받고 필수 용품과 PPE를 갖추도록 합니다.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공급하는 조직과 사전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유급 휴가 혜택에 대한 정보는 이를 받을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재정적으로 자택체류가 용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COVID-19로 인한 병가 및 산재 보상금 지원 정부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본 프로그램에는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에 따른 직원의 병가 권리를 비롯하여, 캘리포니아주지사의 행정 명령 N-62-20에 의거, 본 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시기 동안 산재보상 혜택 및 COVID-19와 업무 간 관련성에 대한 직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개별 통제 조치 및 선별 검사

- 교대 근무 시작 시 모든 직원 및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판매업체나 계약업체, 기타 직원에 대한 체온 점검 또는 증상 선별 검사 제공. 체온 점검/증상 선별 검사 담당자가 최대한 다른 직원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 자택에서 자가 선별 검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자가 선별 검사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선별 검사에 대한 적절한 대안인 경우,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상기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항목에서 설명한 대로 <u>CDC 지침</u>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프거나 COVID-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자택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 고용주는 필요한 경우 직원이 눈 보호 장비 및 장갑을 비롯한 모든 필수 보호 장비를 사용하도록 제공해야 하고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일회용 장갑 사용이 잦은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예: 증상 선별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이나 많은 사람이 만진 품목을 다루는 직원).
- 쇼핑 센터에서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지판을 게시하여 직원, 소매점 세입자, 노점 및 일반인들에게 얼굴 가리개 착용 및 물리적인 거리 두기 수칙 준수 의무를 잊지 않게 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청소 및 소독 절차

- 화장실, 직원 휴게실, 문 및 문 손잡이를 포함한 입구 및 출구, 계단,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및 엘리베이터 조작 버튼과 같이 사람이 붐비는 구역을 철저하게 청소하십시오.
- 벤치, 카운터, ATM PIN 패드, 계산대, 음수대(수도꼭지, 버튼/레버 및 노즐), 가드레일, 진열 상품, 휴대용 장치, 선반, 고객 지원용 전화기 버튼, 손 세정 시설 및 손 소독 시설, 쇼핑몰 좌석, 터치 스크린, 시설 안내 지도, 자동 판매기 등 자주 이용되는 시설의 표면을 자주 살균하십시오.
- 휠체어, 유모차, 휴대용 장치, 카트, 장바구니 또는 기타 쇼핑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장비뿐만 아니라 출퇴근 기록기, 라디오, 헤드셋과 같이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살균하십시오.
- 작업 공간의 표면, 계산대, 터치 스크린, 컴퓨터 화면 및 고정식 및 이동식 장비 조작 버튼 및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손길이 닿는 시설의 표면을 정기적으로 닦으십시오.
- <u>레지오넬라 폐렴(Legionnaires' disease)</u> 및 기타 수인성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시간 시설 가동 중단 후 모든 수도 시스템 및 기능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 되도록이면 오디오 장치, 전화, 태블릿, 노트북, 책상, 펜 및 기타 업무 용품들을 공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PPE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사용 후 장비를 올바른 방법으로 살균할 수 없는 경우, 직원들이 오디오 헤드셋 및 기타 장비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장비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특히 폼 형태로 된 귀마개와 같은 부드러운 다공성 표면에 적합한 살균 절차를 정하십시오.
- 직원이 교대 근무 중 청소 방침을 실천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청소 업무는 직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일환으로 근무 시간 내로 배정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제3자인 청소 업체에 외주 용역을 주는 방식을 이용하면 청소에 대해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늘어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손 소독제를 포함한 적절한 위생 용품을 사용하여 고객이 드나드는 입구 및 출구, 통행로 및 기타 공용 장소 구역에 손 소독제 등의 적절한 소독 용품을 비치하십시오. 손 소독제 거치대가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 손 소독제 디스펜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진되기 전에 다시 채워 놓으십시오.
- 살균용 화학 제품을 선택할 때, 고용주는 환경 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록 목록에 나와 있는 COVID-19 예방용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라야합니다. 새로 등장한 바이러스 병원체에 효과적인 것으로 표시된 소독제나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물 1갤런당 5테이블스푼), 표면에 사용하기 적합한 최소 70% 알코올이 포함된 알코올 용액을 사용하십시오. 직원에게 화학물질 위험과 제조업체 지침, 환기 요건, 안전한 사용을 위한 Cal/OSHA 요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세척제 또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직원은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장갑 및 기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부가 권장한 <u>천식 환자에게 안전한 청소 방법</u>을 따르고 적절히 환기를 합니다.

- 이러한 위생 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고 항상 필요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비누와 종이 타월, 손 소독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소매점 세입자의 매장 및 노점에서 신용 카드를 사용할 것을 장려하고 되도록이면 움직임 감지 조명,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 자동 비누 디스펜서 및 종이 타월 디스펜서, 출퇴근 시간 기록 카드 시스템 등의 핸즈프리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 휴대용 고효율 공기 청정기의 설치와 가능한 최고 효율 제품으로의 건물 공기 필터 업그레이드 및 사무실 및 기타 공간에 외부 공기의 양을 늘리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변경사항 적용을 검토합니다.
- 정기적으로 세세한 곳까지 청소하고 제품을 진열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쇼핑 센터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변경하십시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 모든 쇼핑 센터 구역에서 직원과 고객 간에 최소 6피트의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물리적인 가림막 또는 시각적 표시(예: 바닥 표시, 색상 테이프, 또는 직원 및/또는 고객이 서 있어야 하는 위치를 가리키는 표지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고객 서비스 데스크 또는 기타 장소에 직원과 고객 간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플렉시글라스 또는 기타 가림막 설치와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 고객 및 다른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업무 방법 변경을 요청하는 직원의 제안을 수락하는 쪽을 고려해 보십시오(예: 계산원에서 창고 관리로 변경하기 또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원격 근무로 관리하기).
- 현장 보안 직원은 고객 및 일반인에게 물리적인 거리 두기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상기시키고 장려해야 합니다.
- 고객들이 물리적인 거리 두기를 준수할 수 있게 시각적인 표시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서 매장 앞 연석 또는 수령 지점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거기에서 구입한 상품을 수령하거나 가정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해야 합니다.

- 쇼핑 센터 운영자, 소매점 세입자 및 노점에서는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서, 매장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주문 방식과 직접적으로 물건을 전달 받는 것이 아니라 쇼핑객의 차량에서 환불 처리를 하는 서비스와 같은 포장 및 배달 서비스를 늘리십시오.
- 유동 인구 통제 및 대규모 인원 관리 전략을 개발 및 시행하여 고객들 간에 최소 6피트 이상의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십시오. 유동 인구를 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해야 하고 시각적인 표시, 물리적인 소품 및 표지판을 사용하여 고객들을 안내하는 방법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대규모 인원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소에 따라서 입구와 출구를 확실하게 따로 지정하십시오. 문이 자동으로 개폐되지 않는 경우 되도록이면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세입자와 협력하여 개별 매장 외부의 고객은 필요에 따라 줄을 서게 하여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게 하십시오.
- 쇼핑 센터 운영자, 소매점 세입자 및 노점이 협력하여 매장 진입 대기줄 체계를 만들어서 유동 인구가 혼잡해지거나 물리적인 거리 두기 요건을 위반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매점 세입자의 매장에 방문하는 방식을 디지털 예약 방식 및 오시기 전에 미리 주문해두는 방식과 관련된 지침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 및 장려하십시오.
- 노점의 가판대 또는 키오스크는 새로 변경된 유동 인구 관련 조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물리적인 거리 두기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쇼핑센터 통로 또는 통행 구역에서만 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 대기줄을 섰을 때물리적인 거리 두기 요건을 준수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서 노점의 가판대 또는 키오스크를 재배치하십시오.
- 쇼핑 센터 내에 동시에 있게 되는 인원 수를 제한하기 위해 실내 시설 및 개별 매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수용 인원 규칙을 조정하십시오. 수용 인원 제한은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적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쇼핑 센터 전체의 최대 실내 수용 인원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변경된 최대 수용 인원 한도를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주차 허용 차량수도 제한해 주십시오.
- 물리적인 거리 두기 요건을 계속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야외 쇼핑 센터의 최대 수용 인원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고 거래 시장과 같은 야외 쇼핑 센터에서는 반드시 노점에서 테이블, 천막 및 기타 진열 상품들을 물리적인 거리 두기 요건에 맞게 배치하게 하거나 기타 방수 재질의 가림막을 반드시 배치하십시오.
- 쇼핑 센터 운영자는 소매점 세입자 및 노점과 협력하여, 현지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시설을 재배치해서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으면서도 물리적인 거리 두기 요건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음식점의 식사 공간을 쇼핑 센터 운영자가 관리하는 부동산 부지 내 공간(예: 통행로 또는 변경된 주차 공간)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 소매점 세입자 및 노점과 협력하여 고령자 및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쇼핑 시간을 따로 정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 시간 이후마다 쇼핑센터 전체를 청소하십시오.
- 어린이 놀이 시설 및 회전목마, 놀이기구 또는 오락실과 같은 기타 오락 시설은 반드시 폐쇄해야 합니다.
- 의자, 좌석, 벤치 및 기타 공공 장소의 시설을 재배치하여 물리적인 거리 두기 요건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되도록이면 회의 개최는 전화 또는 웹 세미나를 통해서 해 주십시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고 물리적인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더 적은 수의 인원이 시설에서 회의를 하도록 직원 회의를 조정하십시오. 바이러스 전파를 제한하기 위해 최소 6피트 거리두기를 확보하도록 밀폐된 구역 내에서는 작업자 수에 추가 제한을 적용하십시오.
- 휴게실을 폐쇄하거나 장벽을 사용하거나 테이블/의자 사이의 거리를 늘려 직원들을 분리하고 휴식 중에 모여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차양과 좌석 배치로 실외 휴식 공간을 만듭니다. 시간차 교대 근무 직원은 임금 및 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절차를 유지합니다.
- 물품 적재 구역에서는 물리적인 거리 두기 수칙을 시행하고 배달 확인 서명 시 비접촉방식을 사용하십시오.

□취약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추가적인 준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무용 업무 공간은 반드시모든 Cal/OSHA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표준의 지침을 비롯하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CDPH)의 지침을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의 변경 사항에 따라 운영 방침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